

# 예 산 총 칙

201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01,455,787	12,043,674
일반회계	387,135,959	11,614,079
특별회계	14,319,828	429,595
기타특별회계	14,319,828	429,595
상수도	10,053,201	301,596
의료보호사업	2,312,464	69,374
묘포장	61,000	1,830
주택사업	159,886	4,797
기반조성사업	45,076	1,352
회원산업단지조성지원	142,512	4,275
기초생활보장기금	855,760	25,673
주민소득지원기금	565,500	16,965
공유임야관리	124,429	3,73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09,581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